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8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병진·윤후덕·송옥주

한민수 · 이상식 · 한정애

민병덕 • 권칠승 • 이개호
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, 2023년 4월 11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.

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 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,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·같은 항 제3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3년 12월 31일,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---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년 12월 31일, 2024년 12월 31 일 및 2025년 12월 31일-----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. 기본공제 금액: 2023년 1 가. -----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2월 31일, 2024년 12월 31

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의 3(중견기업은 100분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 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1) • 2) (생략)

나. 추가공제 금액: 2023년 1 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.

1) • 2) (현행과 같음)
나 <u>2023년 1</u>
<u>2월 31일, 2024년 12월 31</u>
일 및 2025년 12월 31일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u>일 및 2025년 12월 31일</u>--

② ~ ⑤ (생 략)